

천마의 집의 住所를 變更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監 所屬下에 11人 이내의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設置하여 教育財政計劃 樹立, 財政運營方向, 財源調達, 投資事業計劃 樹立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地方財政法 第16條의2에 근거하여 本委員會를 設置하여 教育財政計劃 樹立, 財政運營方向, 財源調達, 投資事業計劃 樹立 등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當 委員會에서 執行部の 說明을 듣고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마친 후 우리 委員들이 深深한 討議를 거쳐서 滿場一致로 可決했습니다.

아무쪼록 深思熟考하셔서 原案대로 可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표중 대성의 집 위치란을 다

음과 같이 하며, 천마의 집 위치란의 “남양주군 미금시”를 “남양주시”로 한다.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시행세칙) 각 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두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장
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